

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00. 2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9년 12월 20일 제출
- 회 부 : 1999년 12월 20일

3. 제안이유

-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

4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위원수를 12인에서 8인으로 함 (제5조 제2항)
-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함 (제5조 제3항)
- 기금운용관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사회복지과장을 재할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함 (제11조 제1항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-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